

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<b>2021. 9. 24.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 <b>온라인: 2021. 9. 23.(목) 정오 12:00 이후</b>		총 12쪽 (붙임 10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9. 23.(목)		
담당부서	청소년자립지원과	김은형 과장(02-2100-6271), 박시영 사무관(02-2100-6272)	
	가족지원과	인정숙 과장(02-2100-6341), 신상철 사무관(02-2100-6343)	

##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 법령 9월 24일 시행 -

-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 및 연계할 수 있는 정보 명시
- 자녀양육, 생계,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원 내용 규정
-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(9세 이상 18세 이하 → 9세 이상 24세 이하)

-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,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24일(금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,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,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(이하 '통합정보시스템') 구축·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, 복지지원,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.
-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, 기관 간 공유·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.
-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,



-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신속·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\*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다.

\* 아동학대 정보, 자살예방센터·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,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△자녀양육 지도,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, △기초생활 유지,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, △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다.
- 또한,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,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였다.



□ 한편,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,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.

- 아울러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.

□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,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.”라며,

- “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,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신규 조문대비표 1부.  
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신규 조문대비표 1부.

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종 전	개 정
<p>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5. 경찰관서: <u>가출 등으로</u>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</p> <p>6. ~ 10. (생략)</p> <p>제5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)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<u>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7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<u>운영위원회</u>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5. ----- <u>가정 밖 청소년 등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<u>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</u> 심의사항) ----- <u>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7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 <u>심의위원회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제6조의2(<u>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) ①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<u>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(이하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</u>을 통하</p>

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
2.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
3.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
4.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·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
2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

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

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

5. 「병역법」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

6.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

제8조(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)

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(이하 “특별지원 대상 청소년”이라 한다)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8조(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)

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(이하 “특별지원대상청소년”이라 한다)-----

----- 이하인 ----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

제9조(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)

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) ①

-----  
-----  
-----  
심의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결정해야 -----  
----- 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특별지원대상청소년 -----  
-----  
----- .

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

제10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”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
1. 자녀양육 지도,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
2.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



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“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
2.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
3.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

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.

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

<신 설>

제17조의2(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 
계속 이용) (생략)  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  
리)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 
체의 장(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  
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

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  
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 
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  
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  
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  
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 
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 
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  
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  
다. 다만,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 
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  
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 
한다.

제10조의3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  
원)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  
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 
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「국민기  
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  
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
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  
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 이 경우  
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  
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  
터 계속 이용) (현행과 같음)  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  
리) -----  
-----  
-----





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·5. (생략)

6.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사무

7. 삭제

8.·9. (생략)

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사무

4.·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-----

8.·9. (현행과 같음)

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의3(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)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<u>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</u></li> <li>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<u>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</u></li> <li>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</li> </ol> <p>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<u>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</u></li> <li>2. 상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<u>소지한 사람</u></li> <li>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li> </ol>



종 전	개 정
<p>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3조(위탁계약의 내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<u>3년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<u>계약기간을</u>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위탁계약의 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<u>5년</u> 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 <u>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</u> - -----.</p>